

● 제29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폐회중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##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. 09. 0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## **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**

의안번호 1771

### I. 동의안 개요

#### 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안 일 : 2020. 8. 12.
- 다. 회 부 일 : 2020. 8. 21.

#### 2.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출이유

-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 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### 1) 출자·출연의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대표이사 : 김영대)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
- 설립일 : 2016. 4. 28.
- 설립형태 : 재단법인 (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)
- 설립목적 :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.
- 시설규모
  - 50+재단 본부 : 서울복지타운 3층(50+중부캠퍼스 내)

구분	면적	세부내용
계	4,509.9	
지하1층	914.71	공방작업실, 음악실, 마루교실, 커뮤니티실, 노조사무실
지상1층	945.74	카페, 공유사무실, 다목적로비, 방재실, 창고
지상2층	748.65	50+상담실, 중부캠퍼스 사무실, 공조실
지상3층	950.40	교육실, 강사실, 컴퓨터실, 재단 본부 사무실, 정보화 용역실
지상4층	950.40	교육실, 대강의실, 강당, 창고, 공조실

### - 50+캠퍼스 4개소(서부, 중부, 남부, 북부(예정))

명칭	소재지	건축연면적	층수	비고
50플러스 서부캠퍼스	은평구 통일로 684	3,956 $m^2$	지하1~지상4	'16. 5 개관
50플러스 중부캠퍼스	마포구 백범로 31길21	4,509 $m^2$	지하1~지상4	'17. 3 개관
50플러스 남부캠퍼스	구로구 오류로 36-25	5,714 $m^2$	지하3~지상4	'18. 3 개관
50플러스 북부캠퍼스	도봉구 마들로 13길 84	6,289 $m^2$	지하1~지상3	'20.10 개관 (예정)

※ 50+캠퍼스 확충(준공 예정) : 동남('21.9), 동부('22.6)

○ 주요시설 현황

시설명	시설현황	
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 관 일 : 2016.5.2.</li> <li>- 위 치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</li> <li>- 연 면 적 : 3,956㎡, 지하1~지상 4층</li> <li>- 주요시설 : 모두의 카페, 모두의 강당, 상담센터, 교실, 등</li> </ul>	
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 관 일 : 2017.3.6.</li> <li>- 위 치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</li> <li>- 연 면 적 : 4,509.9㎡, 지하1~지상 4층 (캠퍼스 관리면적 3,683㎡)</li> <li>- 주요시설 : 50+의 서재, 모두의 부엌, 상담센터, 목공교실 등</li> </ul>	
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 관 일 : 2018.3.5.</li> <li>-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-25</li> <li>- 연 면 적 : 5,714㎡, 지하3~지상 4층 (캠퍼스 관리면적 3,755㎡)</li> <li>- 주요시설 : 상담센터, 꿈꾸는 강당, 마루교실, 공유공간 힘나 등</li> </ul>	
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예정 : 2020.9.28.</li> <li>- 개관예정 : 2020.11월</li> <li>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84</li> <li>- 연 면 적 : 6,289㎡, 지하 1~지상 3층</li> <li>- 주요시설 : 연수원, 식당, 상담센터, 공방, 미디어실 등</li> </ul>	
[수탁시설] 서울특별시 도심권 50플러스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탁기간 : 2019.9.1.~2022.8.31.(3년)</li> <li>-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(5개층 임대)</li> <li>- 연 면 적 : 1,053.14㎡, 지하1~지상2층, 지상7~8층</li> <li>- 주요시설 : 교육실, 회의공간, 좌식형 모임공간 등</li> </ul>	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) 주요사업

-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-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
-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·여가 지원 사업,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
-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-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, 연계
-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3) '21년 총 소요예산(안) : 20,694,039천원

4) '21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- 사업비 : 10,781,527천원
-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9,912,512천원

### 5)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,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·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,
- 시, 기관,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 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
-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,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동의안의 취지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,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'재단'이라함)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<sup>1)</sup>되어 있으므로, 2021회계연도 예산의 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###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일반현황

#### 가. 설립 목적 관련

- 재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배경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, 사회참여 등 특화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1) 「지방재정법제18조」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제4조<sup>2)</sup>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동 조례 제5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사업 범위 >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2.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
3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
4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·여가 지원 사업,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
5.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6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7.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8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9.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○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16년 설립된 이후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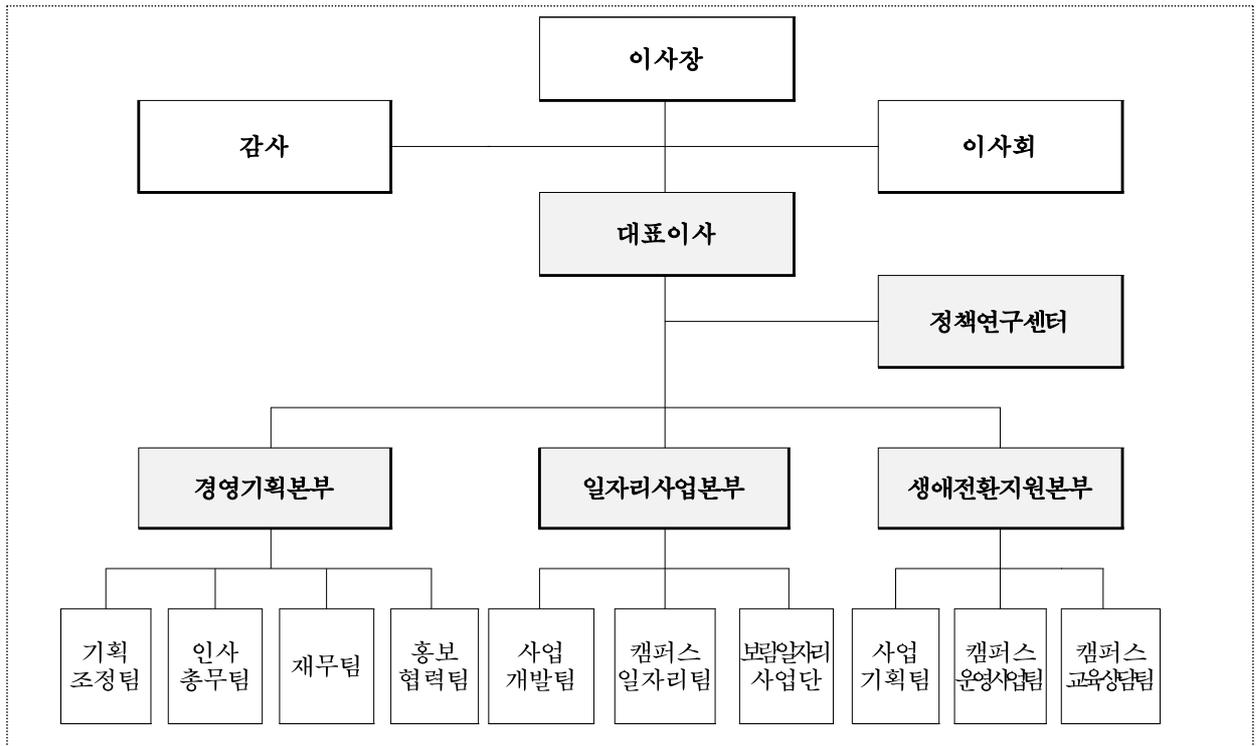
2) 제4조(설립) 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## 나. 조직 및 인력 관련

○ 재단은 3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,

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조직도 >

(’20. 7. 31. 기준)



○ 현재 인력 정원은 128명이며, 현원은 97명임.

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현원표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
계	정원	128	1	4	9	15	20	39	30
	현원	97	1	4	4	14	12	21	41

## 다. 예산 관련

- 집행부는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다음 표와 같이 출연금을 편성·지원하고 있음.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
합 계	22,482	15,258	14,833	11,969	6,560
출 연 금	13,860	14,160	13,540	10,633	6,437
사 업 수 입	487	330	324	198	106
사 업 외 수 입	222	14	103	59	17
잉 여 금	2,581	754	866	1,079	-

## 라. 주요사업

- 재단은 2020년 주요사업으로 7대 전략과제,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.

7대 전략과제	16개 사업
① 50+일모델 개발 및 확산	1. 공공·민간 파트너십 기반 50+일모델 발굴 및 운영 2. 서울50+인턴십 운영 3. 50+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4. 공헌형 일자리 운영
②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	5. 50+세대 생애전환 교육 및 상담 제공 6. 당사자 주도형 활동플랫폼 강화 7. 고객지향 50플러스캠퍼스 공간 활성화 8. 50플러스캠퍼스 기반조성 및 사업성과 확산
③ 50+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강화	9. 50+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10. 50+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11. 50+정책 확산 및 교류
④ 50+세대의 사회공헌활동 문화조성	12.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+세대 역할 강화
⑤ 50+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력 상생 문화조성	13. 50+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상생 강화
⑥ 50+신문화 확산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	14. 시민참여형 민관협력 공익캠페인 15. 50+신문화 및 홍보 콘텐츠 개발
⑦ 지속성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	16.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

###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근거<sup>3)</sup>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<sup>4)</sup> 조례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,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.

---

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